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경 제 자 유 구 역 의 지 정 및 운 영 에
관 한 특 별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산업통상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경제자유구역을 지역 일자리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 산업 육성 중심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내복귀기업의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경제자유구역청 및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개정을 추진

3. 주요내용

가. 국내복귀기업의 지원 절차 및 지원조건 간소화(안 제14조의3)

- 1) 국내복귀기업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입주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는 절차가 필요하여 개선이 필요한 바,
-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국내복귀기업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입주하는 경우 ‘입주국내복귀기업’으로 규정하여 지원 절차 및 지원조건 간소화함

나. 경제자유구역청 기능 강화(안 제28조제6항)

경제자유구역 관리에 집중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청 기능을 강화하여 특구 간 연계 구심점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산업 육성 시너지 창출을 도모함

다.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안 제5조의2제4항)

- 1)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관리권자인 시·도지사가 입주업종 변경을 할 수 있으나,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함
- 2) 관리권자인 시·도지사가 입주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업종 추가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함

라. 산업시설용지의 공급가격 차등 적용(안 별표1)

산업시설용지를 총 조성원가 범위에서 입지여건 등에 따라 분양가격을 차등 적용할 있도록 개정하여 전체 분양율을 제고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 폐지 등, 없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로 한다.

제5조의2제4항제6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2호의 관리권자인 시·도지사가 동법 제33조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려는 입주업종

제6조의3의 제목 “(핵심전략산업 선정 절차 등)”을 “(핵심전략산업 선정 절차 등)”으로 한다.

제11조의2 본문 중 “특별시·광역시”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로 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의3(입주국내복귀기업)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중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제20조의5제1항제1호 중 “「재외공관공증법」”을 “「재외공관 공증법」”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27조의4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지역산업 육성의 상승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특구와의 연계·협력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에 따라 지정된 규제자유특구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개발특구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특구로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연

계·협력을 통해 지역산업 육성의 상승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인정하는 특구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성토지의 용도별 가격기준(제11조의4제5항 관련)

용도	가격기준
1. 주택건설용지(아파트 건설용지, 연립주택건 설용지, 단독주택용지 를 말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 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이하 “감정평가액”이라 한다). 다 만, 아파트건설용지 중 임대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은 조성 원가 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2. 근린생활시설용지	
3. 상업시설용지	감정평가액
4. 업무시설용지	
5. 주상복합용지	
6. 산업시설용지	조성원가 이하의 금액으로서 개발사업시행자가 시·도지 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다만, 산업단지(법 제7조의2 제3호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는 산업단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위개발사업지구 안의 산업시설용지의 면 적이 산업단지 및 단위개발사업지구 유상공급면적의 100 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7. 연구시설용지	
8. 물류시설용지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
9. 관광시설용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정한 금액
10. 위락시설용지	
11. 공공시설용지	조성원가 이하의 금액으로 개발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 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12. 복합용지	복합용지 내 각 시설의 용도별 가격기준에 따른 금액

비고

1. 조성원가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 개발·조성과정에서 직·간접적
으로 투입한 총 비용으로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직접
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서 자본비용 및 선수금을 각각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류시설용지의 입주 수요 등을 고려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정한다.
3. “복합용지”란 용 도란의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 중에 둘 이상의 용도에 해당하는 시설을 하나의 용지에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말한다.
4.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요청)	제2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요청)
① <u>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u>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지역과 인근 지역의 토지 · 건물 등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한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① <u>특별시장 · 통합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u>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조의2(주민의 의견청취) ① 시 · 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u>특별시 · 광역시 · 특</u>	제2조의2(주민의 의견청취) ① -- ----- ----- ----- ----- ----- ----- ----- ----- ----- ----- <u>특별시 · 통합특별시</u>

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하 “시·도”라 한다)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공고한 날부
터 14일 이상 관할 지역의 주민
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③ (생략)

제5조의2(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의 변경) ① ~ ③ (생략)

④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5. (생략)

6. 산업유치계획 중 유치산업의
배치계획 변경 또는 유치산업
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의 추가

가. ~ 라. (생략)

<신설>

·광역시·특별자치시·도 ---

-----.

-----.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의2(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의 변경) ① ~ ③ (현행과 같
음)

④ -----

-----.

1. ~ 5. (현행과 같음)

6.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
0조제1항제2호의 관리권자
인 시·도지사가 동법 제3

제14조의3(입주국내복귀기업)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

제14조의3(입주국내복귀기업)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

로 고려하여 위원회가 선정한 국내복귀기업을 말한다.

1. 지역 간의 균형발전

2. 입주대상 국내복귀기업의 고용창출 규모

3. 입주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업종과 투자규모

제20조의5(카지노업의 허가신청 등) ①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신청인이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

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중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제20조의5(카지노업의 허가신청 등) ① -----

-----.

-----.

1. -----

부 또는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 5. (생략) ② (생략) 제27조(업무 등) ① (생략) 제28조(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① 삭제 ② ~ ⑤ (생략) <u><신설></u>	----- ----- ----- ----- 「재외공관 공증법」 ----- ----- ----- 2.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업무 등) (현행 제1항과 같음) 제28조(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27조의4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지역산업 육성의 상승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특구와의 연계·협력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에 따라 지정된 규제자유특구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
---	---

	<u>정된 연구개발특구</u> 3. 「<u>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u>」 제23조 에 따라 지정된 <u>기회발전특구</u>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 정된 <u>특구</u>로서 <u>경제자유구역</u> <u>청장이 연계·협력을 통해 지</u> <u>역산업 육성의 상승 효과를</u> <u>만들어낼 수 있다고 인정하는</u> <u>특구</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팀	
연 락 처	(044) 203 - 4614